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보험가입 내용

대상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창원시민이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보장기간 | 2025년 9월 22일 ~ 2026년 9월 21일
※ 매년 재가입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

보장대상 | 국내외 어디서나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
(일부 항목 제외)

보험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청구방법 |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청구서 양식은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		20백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		20백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10백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10백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상해 (택시 포함, 전세버스 제외)	사망	10백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10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최대 10백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최대 10백만원
익사 사고 사망 <small>선원 포함</small>		2백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백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2백만원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2백만원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10백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10백만원
개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 <small>일반병원 포함 / 연간 1회</small>		10만원
화상수술비 <small>신규가입</small>		50만원

자전거 보험

① 일반자전거 이용

자전거 사고	사망	10백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10백만원
자전거 진단위로금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4주진단	5주진단	6주진단
20만원	30만원	40만원
7주진단	8주진단	
50만원	6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백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비		최대 2백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백만원

②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7백만원
	후유장해(3%~100%)	최대 7백만원
입원일당(1일당 1만원)	*4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창원시민, 일반자전거 이용시 : ①	타시군거주자, 일반자전거 이용시 : 보험안됨	
창원시민, 누비자 이용시 : ①+②	타시군거주자, 누비자 이용시 : ②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제732조)

▶ 보험범위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6호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전철/기차, 선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 택시(렌트카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란?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익사사고」란?

보험기간 중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 지급

「농기계사고」란?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보험금 지급

「강력·폭력범죄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개물림 사고」란?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말함

「개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란?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화상수술비」란?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지급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